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생활화학가 정용품, 물휴지(물티슈)관련

기술표준원 자료제공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개정 취지 및 주요개정,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별 안전기준 신·구 조문을 비교해 살펴본다.

- 편집자 주 -

개정 취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인 생활화학가정용품, 물휴지(물티슈)와 관련하여 다양한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 인한 인체 위해를 예방하고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전달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해물질 안전요건 신설 및 표시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 개정내용

-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안전성이 확인된 용도 명시 의무화, 성분의 기능(첨가 이유) 표시 확대 등
- 물휴지(물티슈) 유해물질 안전요건 신설 및 전성분 표시 의무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대한 적용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개정된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7(생활화학가정용품),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49(물휴지(물티슈))에 대하여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공산품은 종전규정을 따른다(다만, 시행 이전이라도 이 고시에 의한 자율안전확인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표 1]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별 안전기준 신·구조문 대비

①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7 생활화학가정용품

현행	개정안
제1부 세정제 (Organic surface-active agent)	제1부 세정제 (Organic surface-active agent)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안전요건	4. 안전요건
4.1~ 4.3 <생략>	4.1~ 4.3 <생략>
4.4 용기의 강도 5.7에 따라 시험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4.4 용기 모양 및 강도 5.7에 따라 시험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하며 하이포(차아)염소산염을 포함하는 제품(예: 락스류)의 경우 용기 토출부에 제품을 따를 때 용액이 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추가할 것을 권장한다.
5 ~ 6 <생략>	5 ~ 6 <현행과 같음>
7. 표시사항	7. 표시사항
7.1 표 시 <생략>	7.1 표 시 <현행과 같음>
7.1.1 품명(주1)(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7.1.1 품명
7.1.2 종류	7.1.2 종류
7.1.3 모델명 (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7.1.3 모델명
7.1.4 제조연월	7.1.4 제조연월
7.1.5 제조자명	7.1.5 제조자명
7.1.6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7.1.6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7.1.7 주소 및 전화번호 (국내 제조제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자)	7.1.7 주소 및 전화번호
7.1.8 제조국명(국내 제조제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시)	7.1.8 제조국명
7.1.9 성분명(주2)	7.1.9 성분(주1)
7.1.10 독성(주3)(독성이 있는 것에 한함)	7.1.10 독성(주2)(독성이 있는 것에 한함)
7.1.11 중량 또는 용량(주4)	7.1.11 중량 또는 용량(주3)
7.1.12 액성(주5)	7.1.12 액성(주4)



현행	개정안	비고
<p><신설></p> <p><신설></p> <p><신설></p> <p>7.1.13 표시사항</p> <p>1) ~ 2) <생략></p> <p>3)첨가물의 표시(계면활성제 및 인산염 이외의 세정보조제 및 그 외의 첨가제에 대하여는 아래 재료들이 중량 기준으로 0.2 % 를 초과하는 농도로 사용될 경우 그 성분의 기능의 명칭을 나타내는 용어를 이용하여 표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소계 표백제 - 염소계 표백제 - EDTA 및 그 염 - NTA(니트릴로트리아세트산) 및 그 염 - 페놀 및 할로겐화 페놀 - 파라다이클로로벤젠 - 방향족 탄화수소 - 지방족 탄화수소 - 할로겐화 탄화수소 - 비누 - 제올라이트 	<p>7.1.13 “KC마크는 이 제품이 세정제 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하며, 타용도와는 무관합니다” 라는 문구를 12 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가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제품의 외형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글자크기를 줄일 수 있다.</p> <p>7.2 사용상 주의사항(주5)(취급상 주의사항 : 사용 방법이 필요한 제품은 사용방법을 명기할 것)</p> <p>7.3 위험표시</p> <p>(1) 5 % 이상 벤젠을 함유한 제품은 제품의 전면부에 “△위험”, “독성”, “취발시 유해함”을 표시하고 10 % 이상인 경우에는 “삼키면 유해하거나 치명적임. 즉시의사에 문의할 것”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p> <p>(2) 10 % 이상 톨루엔, 자이렌, 석유정제물을 함유한 제품은 제품의 전면부에 “△위험”, “삼키면 유해하거나 치명적임. 즉시 의사에 문의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p> <p>주 1 성분 다음 항목의 표시방법 및 예시에 따라 표시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계면활성제 및 인산염 이외에 제품에 함유된 성분에 대하여 그 성분의 기능(첨가 이유)을 표시한다.</p> <p>(표시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백제 - 산도조절제 - 살균제 - 형광증백제 - 향료 	<p>내용변경 없이 단순순서 변경</p> <p>내용변경 없이 단순순서 변경</p>

현행	개정안	비고				
<p>- 폴리카르복실레이트 (아래 재료는 농도와 관계없이 표시)</p> <p>- 효소</p> <p>- 살균제</p> <p>- 형광증백제</p> <p>- 향료</p> <p>- 방부제</p> <p>7.2 사용상 주의사항(주6)(취급상 주의사항 : 사용방법이 필요한 제품은 사용방법을 명기할 것)</p> <p>7.3 위험표시</p> <p>(1) 5 % 이상 벤젠을 함유한 제품은 제품의 전면부에 “△ 위험”, “독성”, “휘발시 유해함”을 표시하고 10 % 이상인 경우에는 “삼키면 유해하거나 치명적임. 즉시의사에 문의할 것”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p> <p>(2) 10 % 이상 톨루엔, 자이렌, 석유정제물을 함유한 제품은 제품의 전면부에 “△ 위험”, “삼키면 유해하거나 치명적임. 즉시 의사에 문의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p> <p>주1 품명</p> <p>(1) 자동차용 세정제, 유리용 세정제등 주용도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여 ○○용 세정제라 표시한다.</p> <p>주2 성분명</p> <p>(1) 인체 세정제 이외의 성분표시에 있어서 중요한 산 또는 알칼리, 석유정제물에 대하여 그 명칭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 주성분의 문자를 표시하도록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68 1443 685 1745"> <thead> <tr> <th>성분의 종류</th> <th>성분의 시험방법</th> </tr> </thead> <tbody> <tr> <td>염산</td> <td>순수 50mL에 시료 5.0g을 함유한 용액에 대하여 1/2N 수산화나트륨용액을 사용하여 중화 적정하고 1/2N 수산화나트륨용액의 소요량에 대응하는 염산을 구하여 함유율을 산출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지시약은 브롬치물부루용액으로 한다.</td> </tr> </tbody> </table>	성분의 종류	성분의 시험방법	염산	순수 50mL에 시료 5.0g을 함유한 용액에 대하여 1/2N 수산화나트륨용액을 사용하여 중화 적정하고 1/2N 수산화나트륨용액의 소요량에 대응하는 염산을 구하여 함유율을 산출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지시약은 브롬치물부루용액으로 한다.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내용변경 없이 단순순서 변경</p> <p>내용변경 없이 단순순서 변경</p>
성분의 종류	성분의 시험방법					
염산	순수 50mL에 시료 5.0g을 함유한 용액에 대하여 1/2N 수산화나트륨용액을 사용하여 중화 적정하고 1/2N 수산화나트륨용액의 소요량에 대응하는 염산을 구하여 함유율을 산출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지시약은 브롬치물부루용액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성분의 종류	성분의 시험방법	〈삭제〉
황산	염산의 시험방법에 준한다.	
수산화나트륨	순수 10mL의 희황산(순수와 황산(KS M ISO 6353-2 R37에 정하는 시약특급으로 한다)과 용적이 1대 1의 비율로 혼합한 것으로 한다) 10mL 및 시료 5.0g을 합한 용액에 대하여 1/10N 과망간산칼륨용액을 사용하여 산화환원적정을 하며 사용된, 1/10N 과망간산칼륨용액의 소요량에 대응하는 수산을 구하여 함유율을 산출한다.	
염산 및 수산화나트륨 함유한 것 중의 염산	염산의 시험방법에 준하여 총산을 중화 적정하는데 필요한 1/2N 수산화나트륨용액의 소요량을 구하고 이것에서 수산화나트륨의 시험방법에서 구한 수산화나트륨의 수량에 대응하는 1/2N 수산화나트륨용액의 소요량을 제한 것에 대응하는 염산을 구하여 함유율을 산출한다.	
설파민산	순수 50mL에 시료 5.0g을 함유한 용액에 대하여 1/2N 아초산나트륨용액을 사용하여 단위차 적정을 하고 사용된 1/2N 아초산나트륨용액의 소요량에 대응하는 설파민산의 함유율을 산출한다.	
설파민산 및 황산을 포함한 것 중의 황산	황산의 시험방법에 준하여 총산을 중화 적정하는데 필요한 1/2N 수산화나트륨 용액의 소요량을 구하여 여기에서 설파민산의 시험방법에 따라 구하여진 설파민산의 수량에 대응하는 1/2N 수산화나트륨 용액의 소모량에 대응하는 황산을 구하여 함유율을 산출한다.	
수산화나트륨	순수 50mL에 시료 5.0g을 함유한 용액에 대하여 1/2N 염산을 사용하여 중화 적정하고 1/2N 염산 소요량에 대응하는 수산화나트륨을 구하여서 함유율을 산출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지시약은 브롬치몰부루용액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성분의 종류	성분의 시험방법	
계면 활성제	KS M 2709 시험방법에 의한다.	
연마제	제품의 내용물이 완전히 혼합되도록 충분히 흔들어서 5g의 시료를 취하여 KS M 2709 5.2 알콜가용분의 정량에 의거 만들어진 알콜 불용분을 300mL 비이커에 정밀히 채취하여 증류수 50mL를 가한 다음 30 분간 가끔 흔들어 저으면서 끓여 용해시킨다. 따뜻한 용액 그대로 유리여과기 (G4)를 사용해서 거르고 남은 양에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한번 반복한다. 따뜻한 용액을 다시한번 걸러내어 105±2℃에서 1시간 건조시켜 데시케이터 속에서 방랭한 다음 그 무게를 측정하여 다음 식에 의해 연마제(%)를 산출한다.	
석유정제물	10 % 이상	
<p>비고 시험에 사용하는 용액의 제조방법은 KS M 0002 또는 KS M 8001에 의한다.</p> <p>주3 독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화학물질 또는 유독물·관찰물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에 비교하여 특히 눈에 띄는 붉은 글씨로 제품의 전면부에 “△독성있음”이라 표시하여야 한다.</p> <p>주4 중량 또는 용량 <생략> 주5 액 성 <생략> 주6 사용상 주의사항 및 사용방법 <생략></p>		<p>주 2 독성 제품에 사용된 성분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_____ 유독물·관찰물질로 지정된 경우에는 _____.</p> <p>주 3 중량 또는 용량 <현행과 같음> 주 4 액성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2부 방향제 (Room Perfumery)</p> <p>1 ~ 6 <생략> 7. 표시사항 7.1 표 시 <생략> 7.1.1 품명(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7.1.2 종류 7.1.3 모델명(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7.1.4 제조연월 7.1.5 제조자명 7.1.6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7.1.7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제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7.1.8 제조국명(국내 제조제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시) 7.1.9 성분명 7.1.10 독성(주1)(독성이 있는 것에 한함) 7.1.11 중량 또는 용량(주2) <신설></p> <p>7.2 사용상 주의사항(주3) <생략> 7.3 위험표시 <생략> <신설></p>	<p>주 5 사용상 주의사항 및 사용방법 <현행과 같음> 제2부 방향제 (Room Perfumery)</p> <p>1 ~ 6 <현행과 같음> 7. 표시사항 7.1 표 시 <현행과 같음> 7.1.1 품명 7.1.2 종류 7.1.3 모델명 7.1.4 제조연월 7.1.5 제조자명 7.1.6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7.1.7 주소 및 전화번호 7.1.8 제조국명 7.1.9 성분(주1) 7.1.10 독성(주2)(독성이 있는 것에 한함) 7.1.11 중량 또는 용량(주3) 7.1.12 “KC마크는 이 제품이 방향제 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하며, 타용도와는 무관합니다”라는 문구를 12 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가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제품의 외형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글자크기를 줄일 수 있다. 7.2 사용상 주의사항(주4) <현행과 같음> 7.3 위험표시 <현행과 같음></p> <p>주 1 성분 제품에 함유된 성분에 대하여 그 성분의 기능(첨가 이유)을 표시한다. (표시 예) - 표백제 - 산도조절제 - 효소</p>

현행	개정안
<p>주 1 독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화학물질 또는 유독물질·관찰물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에 비교하며 특히 눈에 띄는 붉은 글씨로 제품의 전면부에 “△독성있음”이라 표시하여야 한다.</p> <p>주 2 중량 또는 용량 <생략> 주3 사용상 주의사항 및 사용방법 <생략></p>	<p>- 살균제 - 형광증백제 - 향료</p> <p>주 2 독성 제품에 사용된 성분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_____ 유독물질·관찰물질로 지정된 경우에는 _____.</p> <p>주 3 중량 또는 용량 <현행과 같음> 주 4 사용상 주의사항 및 사용방법 <현행과 같음></p>
<p>제3부 접착제 (Adhesives)</p> <p>7. 표시사항 7.1 표 시 <생략> 7.1.1 품명1) (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7.1.2 종류(일반공작용, 공업용으로 분류한다) 7.1.3 모델명(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7.1.4 제조연월 7.1.5 제조자명 7.1.6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7.1.7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제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7.1.8 제조국명(국내 제조제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시) 7.1.9 성분명2) 7.1.10 독성3)(독성이 있는 것에 한함) 7.1.11 중량 또는 용량4) <신설></p> <p>7.2 사용상 주의사항5) <생략></p>	<p>제3부 접착제 (Adhesives)</p> <p>7. 표시사항 7.1 표 시 <현행과 같음> 7.1.1 품명(주1) 7.1.2 종류(일반공작용, 공업용으로 분류한다) 7.1.3 모델명 7.1.4 제조연월 7.1.5 제조자명 7.1.6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7.1.7 주소 및 전화번호 7.1.8 제조국명 7.1.9 성분(주2) 7.1.10 독성(주3)(독성이 있는 것에 한함) 7.1.11 중량 또는 용량(주4) 7.1.12 “KC마크는 이 제품이 접착제 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하며, 타용도와는 무관합니다”라는 문구를 12 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가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제품의 외형에 지장</p>



현행	개정안
<p>7.3 위험표시 <생략></p> <p>주1 품명 <생략></p> <p>주2 성분명 주성분명(합성수지 또는 고무)과 구성비율(100분율)을 표시하고 주용제명과 그 구성비율(100분율)을 병기 표시하여야 한다. 이때 표시치의 허용범위는 $\pm 3\%$로 한다.</p> <p>주3 독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화학물질 또는 유독물질·관찰물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에 비교하여 특히 눈에 띄는 붉은 글씨로 제품의 전면부에 “△독성있음”이라 표시하여야 한다.</p> <p>주4 중량 또는 용량 <생략></p> <p>주5 사용상 주의사항 및 사용방법 <생략></p>	<p>을 줄 경우에는 글자크기를 줄일 수 있다.</p> <p>7.2 사용상 주의사항(주5) <현행과 같음></p> <p>7.3 위험표시 <현행과 같음></p> <p>주1 품명 <현행과 같음></p> <p>주 2 성분 제품에 함유된 성분에 대하여 그 성분의 기능(첨가 이유)을 표시한다. (표시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백제 - 산도조절제 - 효소 - 살균제 - 형광증백제 - 향료 <p>주 3 독성 제품에 사용된 성분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_____ 유독물·관찰물질로 지정된 경우에는 _____.</p> <p>주 4 중량 또는 용량 <현행과 같음></p> <p>주 5 사용상 주의사항 및 사용방법 <현행과 같음></p>
<p>제4부 광택제 (Artificial waxes and prepared waxes)</p> <p>7. 표시사항</p> <p>7.1 표시 <생략></p> <p>7.1.1 품명(1) (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p> <p>7.1.2 종류(일반공작용, 공업용으로 분류한다)</p> <p>7.1.3 모델명(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p> <p>7.1.4 제조연월</p>	<p>제4부 광택제 (Artificial waxes and prepared waxes)</p> <p>7. 표시사항</p> <p>7.1 표시 <현행과 같음></p> <p>7.1.1 품명</p> <p>7.1.2 종류(일반공작용, 공업용으로 분류한다)</p> <p>7.1.3 모델명</p> <p>7.1.4 제조연월</p>

현행	개정안
<p>7.1.5 제조자명</p> <p>7.1.6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p> <p>7.1.7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제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p> <p>7.1.8 제조국명(국내 제조제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시)</p> <p>7.1.9 성분(2)</p> <p>7.1.10 독성(3)(독성이 있는 것에 한함)</p> <p>7.1.11 용량(4)</p> <p>〈신설〉</p> <p>7.2 사용상 주의사항(5)</p> <p>주(1) 품명 <생략></p> <p>주(2) 성분 광택제의 성분표시는 주요성분에 대하여 왁스, 유지, 유기용제, 합성수지, 실리콘 오일 등의 해당 성분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여 표시한다.</p> <p>주(3) 독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화학물질 또는 유독물·관찰물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에 비교하여 특히 눈에 띄는 붉은 글씨로 “△독성있음”이라 표시하여야 한다.</p> <p>주(4) 용량 <생략></p> <p>주(5) <생략></p>	<p>7.1.5 제조자명</p> <p>7.1.6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p> <p>7.1.7 주소 및 전화번호</p> <p>7.1.8 제조국명</p> <p>7.1.9 성분(주1)</p> <p>7.1.10 독성(주2)(독성이 있는 것에 한함)</p> <p>7.1.11 용량(주3)</p> <p>7.1.12 “KC마크는 이 제품이 광택제 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하며, 타용도와는 무관합니다”라는 문구를 12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가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제품의 외형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글자크기를 줄일 수 있다.</p> <p>7.2 사용상 주의사항(주4)</p> <p>〈삭제〉</p> <p>주1 성분 제품에 함유된 성분에 대하여 그 성분의 기능(첨가이유)을 표시한다.</p> <p>(표시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백제 - 산도조절제 - 효소 - 살균제 - 형광증백제 - 향료 <p>주 2 독성 제품에 사용된 성분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_____ 유독물·관찰물질로 지정된 경우에는 _____.</p> <p>주 3 용량 <현행과 같음></p> <p>주 4 사용상 주의사항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5부 탈취제 (Deodorizing agent)</p> <p>7. 표시사항 7.1 표 시 <생략> 7.1.1 품명(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7.1.2 종류 7.1.3 모델명(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7.1.4 제조연월 7.1.5 제조자명 7.1.6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7.1.7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제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7.1.8 제조국명(국내 제조제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시) 7.1.9 성분명(주1) 7.1.10 독성(주2)(독성이 있는 것에 한함) 7.1.11 중량 또는 용량(주3) <신설></p> <p>7.2 사용상 주의사항(주6)(취급상 주의사항 : 사용방법이 필요한 제품은 사용방법을 명기할 것)</p> <p>주1 성분명 주성분을 표시한다. 예시) 제오라이트, 활성탄</p>	<p>제5부 탈취제 (Deodorizing agent)</p> <p>7. 표시사항 7.1 표 시 <현행과 같음> 7.1.1 품명 7.1.2 종류 7.1.3 모델명 7.1.4 제조연월 7.1.5 제조자명 7.1.6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7.1.7 주소 및 전화번호 7.1.8 제조국명 7.1.9 성분(주1) 7.1.10 독성(주2)(독성이 있는 것에 한함) 7.1.11 중량 또는 용량(주3) 7.1.12 "KC마크는 이 제품이 탈취제 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하며, 타용도와는 무관합니다"라는 문구를 12 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가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제품의 외형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글자크기를 줄일 수 있다.</p> <p>7.2 사용상 주의사항(주4)(취급상 주의사항 : 사용방법이 필요한 제품은 사용방법을 명기할 것)</p> <p>주 1 성분 제품에 함유된 성분에 대하여 그 성분의 기능(첨가 이유)을 표시한다. (표시 예) - 표백제 - 산도조절제 - 효소 - 살균제</p>

현행	개정안
<p>주2 독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화학물질 또는 유독물·관찰물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에 비교하여 특히 눈에 띄는 붉은 글씨로 “△독성있음”이라 표시하여야 한다.</p> <p>주3 중량 또는 용량 <생략></p> <p>주 4 사용상 주의사항 및 사용방법 <생략></p>	<p>- 형광증백제 - 향료</p> <p>주 2 독성 제품에 사용된 성분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_____ 유독물·관찰물질로 지정된 경우에는 _____.</p> <p>주3 중량 또는 용량 <현행과 같음></p> <p>주 4 사용상 주의사항 및 사용방법 <현행과 같음></p>
<p>제6부 합성세제 (Synthetic detergents)</p> <p>3. 종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1 산·염기도에 따른 종류(1) (1) 알칼리성(2)(pH 11.0 초과) (2) 약알칼리성(2)(pH 8.0 초과 11.0 이하) (3) 중성(3)(pH 6.0 이상 8.0 이하) (4) 약산성(4)(pH 6.0 미만 3.0이상) (5) 산성(4)(pH3.0 미만)</p> <p>주 (1) pH 시험 농도는 분말상(고체)의 경우 시료 세제의 표준 사용농도(g/L)로 하고, 액상의 경우 원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면, 마, 레이온,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등의 섬유 제품 세탁에 적합한 것으로 분말상, 입자상인 것 (3) 1. 건, 모, 큐프라, 아세테이트 등의 섬유 제품 세탁에 적합한 것으로 분말상, 입자상, 액상, 고체상인 것 2. 면, 마, 레이온,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등의 섬유 제품 세탁에 적합한 것으로 액상인 것 (4) 산성세제에 적합한 섬유, 락스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경고 표시 등 발생될 수 있는 제제점에 대한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제6부 합성세제 (Synthetic detergents)</p> <p>3. 종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1 산·염기도에 따른 종류 (1) 알칼리성(pH 11.0 초과) (2) 약알칼리성(pH 8.0 초과 11.0 이하) (3) 중성(pH 6.0 이상 8.0 이하) (4) 약산성(pH 6.0 미만 3.0이상) (5) 산성(pH3.0 미만)</p> <p><삭제></p>



현행	개정안
<p>3.2 성상에 따른 종류 <생략></p> <p>5. 시험방법 5.1 pH KS M 2709의 7.3에 따른다.</p> <p>5.2 생분해도 KS I ISO 9439, KS I ISO 7827 또는 KS M 2714에 따른다. (1) (주1) 제품에 포함된 원료 등의 이유로 생분해도 분석이 어려운 경우 사용된 계면활성제 원료를 기준으로 시험할 수 있다.</p> <p>7. 표시 <생략> 7.1 품명 및 종류(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7.2 용도 및 사용상 주의사항 7.3 표준사용량 7.4 실중량 또는 실용량 7.5 제조자명 및 제조연월 7.6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7.7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제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7.8 제조국명(국내 제조제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 무역법에 의거 표시)</p> <p><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p>	<p>3.2 성상에 따른 종류 <현행과 같음></p> <p>5. 시험방법 5.1 pH KS M 2709의 7.3에 따른다. 이때 분말상(고체) 제품은 시료 세제의 표준 사용농도(g/L)로 하고, 액상 제품은 원액을 기준으로 한다.</p> <p>5.2 생분해도 KS I ISO 9439, KS I ISO 7827 또는 KS M 2714에 따른다. 단, 제품에 포함된 원료 등의 이유로 생분해도 분석이 어려운 경우 사용된 계면활성제 원료를 기준으로 시험할 수 있다.</p> <p>7. 표시 <현행과 같음> 7.1.1 품명 7.1.2 종류(주1) 7.1.3 용도(주2) 7.1.4 제조연월 7.1.5 제조자명 7.1.6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7.1.7 주소 및 전화번호 7.1.8 제조국명 7.1.9 성분(주3) 7.1.10 독성(주4)(독성이 있는 것에 한함) 7.1.11 실중량 또는 실용량 7.1.12 표준사용량(주5) 7.1.13 “KC마크는 이 제품이 합성세제 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하며, 타용도와는 무관합니다”라는 문구를 12 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가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제품의 외형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글자크기를 줄일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신설〉</p> <p>7.9 표시사항</p> <p>1) ~ 2) 〈생략〉</p> <p>3) 첨가물의 표시 (계면활성제 및 인산염 이외의 세정보조제 및 그 외의 첨가제에 대하여는 아래 재료들이 중량 기준으로 0.2%를 초과하는 농도로 사용될 경우 그 성분의 기능의 명칭을 나타내는 용어를 이용하여 표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소계 표백제 - 염소계 표백제 - EDTA 및 그 염 - NTA (니트릴로트리아세트산) 및 그 염 - 페놀 및 할로겐화 페놀 - 파라다이클로로벤젠 - 방향족 탄화수소 - 지방족 탄화수소 - 할로겐화 탄화수소 - 비누 - 제올라이트 - 폴리카르복실레이트 	<p>7.2 사용상 주의사항(취급상 주의사항 : 사용방법이 필요한 제품은 사용방법을 명기할 것. 단, 약산성 또는 산성제품의 경우 락스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경고 표시하는 등 사용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함)</p> <p>주 1 종류 3. 종류에 따라 산·염기도 및 성상에 따른 종류를 기입한다.</p> <p>주 2 용도 3. 종류에 따라 세탁이 적합한 섬유제품을 표시한다. (표시 예) - 면·마·레이온·폴리에스테르·나일론·아크릴용 - 건·모·쿠프라·아세테이트용</p> <p>주 3 성분 다음 항목의 표시방법 및 예시에 따라 표시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계면활성제 및 인산염 이외에 제품에 함유된 성분에 대하여 그 성분의 기능(첨가 이유)을 표시한다. (표시 예) - 표백제 - 산도조절제 - 효소 - 살균제 - 형광증백제 - 향료 - 방부제</p> <p>〈삭제〉</p>



현행	개정안
<p>(아래 재료는 농도와 관계없이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소 - 살균제 - 형광증백제 - 향료 - 방부제 <p>(표시 예)</p> <p>1) 품명은 의류용 합성세제, 의류용 복합성세제, 의류용, 복합비누세제, 의류용 액체 합성세제 등으로 기입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류용 합성세제 주된 계면활성제가 지방산나트륨, 지방산칼륨 등의 지방산염(이하 “순비누분”이라 한다) 이외의 계면활성제로 구성되고, 순 비누분 이외의 계면활성제 함유량이 총 계면활성제 함유량의 70% 이상인 것 ○ 의류용 복합성세제 순비누분 이외의 계면활성제 함유량이 총 계면활성제 함유량이 총 계면활성제 함유량의 70% 미만, 30% 이상인 것 ○ 의류용 복합비누세제 주된 계면활성제가 순 비누분으로 구성되고 계면활성제의 함유량의 총 계면활성제 함유량의 30% 미만인 것 <p>2) 종류는 액성을 기입한다.</p> <p>3) 용도는 약알칼리성일 경우 면·마·레이온·폴리에스테르·나일론·아크릴 등의 섬유제품의 세탁에 적합한 것은 면·마·레이온·폴리에스테르·나일론·아크릴 용으로 기입하고, 중성일 경우 건·모·쿠프라·아세테이트 등의 섬유제품의 세탁에 적합한 것은 건·모·쿠프라·아세테이트용으로 기입한다.</p> <p>4) 중량 또는 용량은 실중량 또는 실용량으로 기입한다.</p> <p>〈신설〉</p> <p>5) 표준사용량의 표시는 세탁수(5L 또는 30L)에 대한 세제 사용량(g또는 mL)으로 표시한다. 세탁할 의류량(kg)에</p>	<p>주 4 독성 제품에 사용된 성분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0조 또는 제11조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화학물질 또는 유독물·관찰물질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에 비교하여 특히 눈에 띄는 붉은 글씨로 제품의 전면부에 “△독성있음”이라 표시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대한 세제 사용량(g 또는 mL)을 추가로 표시할 경우에는 KS M 2715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다만, 스프레이형 제품은 표준사용량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p>	<p>주 5 표준사용량 표준사용량의 표시는 세탁수 (5L 또는 30L)에 대한 세제 사용량(g 또는 mL)으로 표시한다. 세탁할 의류량(kg)에 대한 세제 사용량(g 또는 mL)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때 표시방법은 KS M 2715에 따라 표시한다. 다만, 스프레이형 제품은 표준사용량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7부 표백제 (Bleaching agent)</p> <p>7. 표 시 표백제의 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사항 및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p> <p>7.1 품명 및 종류(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 가능)</p> <p>7.2 성분</p> <p>7.3 액성</p> <p>7.4 중량 또는 용량</p> <p>7.5 사용용도 및 표준사용량</p> <p>7.6 제조연월</p> <p>7.7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 한 함)</p> <p>7.8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국내 제조제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p> <p>7.9 제조국명(국내 제조제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 무역법에 의거 표시)</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7부 표백제 (Bleaching agent)</p> <p>7. 표 시 제품의 용기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사항 및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다.</p> <p>7.1.1 품명</p> <p>7.1.2 종류</p> <p>7.1.3 용도</p> <p>7.1.4 제조연월</p> <p>7.1.5 제조자명</p> <p>7.1.6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p> <p>7.1.7 주소 및 전화번호</p> <p>7.1.8 제조국명</p> <p>7.1.9 성분(주1)</p> <p>7.1.10 독성(주2)(독성이 있는 것에 한함)</p> <p>7.1.11 실중량 또는 실용량</p> <p>7.1.12 표준사용량</p> <p>7.1.13 “KC마크는 이 제품이 표백제 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하며, 타용도와는 무관합니다”라는 문구를 12 포</p>



현행	개정안																		
<p>7.10 사용상의 주의사항(응급처리사항 포함) 〈생략〉</p> <p>〈신설〉</p>	<p>7.2 사용상의 주의사항(응급처리사항 포함) 〈현행과 같음〉</p> <p>주 1 성분 다음 항목의 표시방법 및 예시에 따라 표시한다. (1) 계면활성제 사용량에 따른 중량 백분율 표시(계면활성제에 대하여는 표 2를 참고하여 계면활성제의 계별을 나타내는 용어를 이용해 표시하고, 계면활성제의 총 함량에 대해 중량 백분율로 표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표 4</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계면활성제의 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계면활성제의 계열을 나타내는 용어</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음이온계 계면활성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방산계(음이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직쇄 알킬 벤젠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고급 알코올계(음이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알파 올레핀계</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비이온계 계면활성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방산계(비이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고급 알코올계(비이온)</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양쪽성 이온계 계면활성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알킬 페놀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아미노산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베타인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양이온계 계면활성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아민 옥시드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양이온계 계면활성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제4급 암모늄염계</td> </tr> </tbody> </table> <p>(표시 예) 〈계면활성제 표시〉 지방산계(음이온), 직쇄알킬벤젠계(음이온), 알파올레핀계, 아미노산계, 베타인계,</p>	계면활성제의 구분	계면활성제의 계열을 나타내는 용어	음이온계 계면활성제	지방산계(음이온)	직쇄 알킬 벤젠계	고급 알코올계(음이온)	알파 올레핀계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지방산계(비이온)	고급 알코올계(비이온)	양쪽성 이온계 계면활성제	알킬 페놀계	아미노산계	베타인계	양이온계 계면활성제	아민 옥시드계	양이온계 계면활성제	제4급 암모늄염계
계면활성제의 구분	계면활성제의 계열을 나타내는 용어																		
음이온계 계면활성제	지방산계(음이온)																		
	직쇄 알킬 벤젠계																		
	고급 알코올계(음이온)																		
	알파 올레핀계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지방산계(비이온)																		
	고급 알코올계(비이온)																		
양쪽성 이온계 계면활성제	알킬 페놀계																		
	아미노산계																		
	베타인계																		
양이온계 계면활성제	아민 옥시드계																		
양이온계 계면활성제	제4급 암모늄염계																		

현행	개정안
	<p>아민 옥사이드계, 고급알코올계(비이온) 등 〈계면활성제 총 함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미만 - 5% 이상 ~ 15% 미만 - 15% 이상 ~ 30% 미만 - 30% 이상 <p>2) 인산염 사용량 표시(인산염에 대하여는 인산염의 용어를 이용해 표시하고 괄호쓰기로 오산화인 (P₂O₅)으로서의 함량을 표시한다.)</p> <p>3) 계면활성제 및 인산염 이외에 제품에 함유된 성분에 대하여 그 성분의 기능(첨가 이유)을 표시한다.</p> <p>(표시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백제 - 산도조절제 - 효소 - 살균제 - 형광증백제 - 향료 - 방부제 <p>주 2 독성 제품에 사용된 성분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0조 또는 제11조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화학물질 또는 유독물·관찰물질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에 비교하여 특히 눈에 띄는 붉은 글씨로 제품의 전면부에 “△독성있음”이라 표시하여야 한다.</p>
<p>제8부 섬유유연제 (Fabric Softening agent)</p> <p>4.3 유기성 유해물질 다음표의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p>	<p>제8부 섬유유연제 (Fabric Softening agent)</p> <p>4.3 유기성 유해물질 다음표의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해물질</th> <th>기준치(이하)</th> </tr> </thead> <tbody> <tr> <td>벤질이소치아졸리논</td> <td>15mg/kg</td> </tr> <tr> <td>메칠이소치아졸리논</td> <td>100mg/kg</td> </tr> <tr> <td>페놀실에탄올</td> <td>10000mg/kg</td> </tr> <tr> <td>페놀류</td> <td>1000mg/kg</td> </tr> <tr> <td>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td> <td>15mg/kg</td> </tr> <tr> <td>폼알데하이드</td> <td>75mg/kg</td> </tr> <tr> <td>벤잘코늄클로라이드</td> <td>500mg/kg</td> </tr> <tr> <td>벤조익액씨드</td> <td>5000mg/kg</td> </tr> <tr> <td>벤질알코올</td> <td>10000mg/kg</td> </tr> <tr> <td>-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계 -디메틸디알킬(C_{12~18})암모 늄클로라이드계 -형광증백제</td> <td>사용금지</td> </tr> <tr> <td>파라벤류</td> <td>4000mg/kg</td> </tr> </tbody> </table>	유해물질	기준치(이하)	벤질이소치아졸리논	15mg/kg	메칠이소치아졸리논	100mg/kg	페놀실에탄올	10000mg/kg	페놀류	1000mg/kg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15mg/kg	폼알데하이드	75mg/kg	벤잘코늄클로라이드	500mg/kg	벤조익액씨드	5000mg/kg	벤질알코올	10000mg/kg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계 -디메틸디알킬(C _{12~18})암모 늄클로라이드계 -형광증백제	사용금지	파라벤류	4000mg/kg	<p>표 2</p>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해물질</th> <th>기준치(이하)</th> </tr> </thead> <tbody> <tr> <td>벤즈이소치아졸리논</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페녹시에탄올</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트리클로산</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유해물질	기준치(이하)	벤즈이소치아졸리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페녹시에탄올	〈현행과 같음〉	트리클로산	〈현행과 같음〉														
유해물질	기준치(이하)																																																
벤질이소치아졸리논	15mg/kg																																																
메칠이소치아졸리논	100mg/kg																																																
페놀실에탄올	10000mg/kg																																																
페놀류	1000mg/kg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15mg/kg																																																
폼알데하이드	75mg/kg																																																
벤잘코늄클로라이드	500mg/kg																																																
벤조익액씨드	5000mg/kg																																																
벤질알코올	10000mg/kg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계 -디메틸디알킬(C _{12~18})암모 늄클로라이드계 -형광증백제	사용금지																																																
파라벤류	4000mg/kg																																																
유해물질	기준치(이하)																																																
벤즈이소치아졸리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페녹시에탄올	〈현행과 같음〉																																																
트리클로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p>7. 표시 <생략> 7.1 품명(1)(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7.2 성분(2) 7.3 중량 또는 용량(3) 7.4 액성(4) 7.5 표준사용량(5) 7.6 제조연월 7.7 제조자명 7.8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7.9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제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7.10 제조국명(국내 제조제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 무역법에 의거 표시)</p> <p><신설> <신설></p>	<p>7. 표시 <현행과 같음> 7.1.1 품명 7.1.2 종류 7.1.3 제조연월 7.1.4 제조자명 7.1.5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7.1.6 주소 및 전화번호 7.1.7 제조국명 7.1.8 성분(주1) 7.1.9 독성(주2)(독성이 있는 것에 한함) 7.1.10 중량 또는 용량 7.1.11 액성(주3) 7.1.12 표준사용량(주4) 7.1.13 "KC마크는 이 제품이 섬유유연제 안전기준에 적합</p>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7.11 사용상 주의사항(6)(취급상 주의사항 : 사용방법이 필요한 제품은 사용방법을 명기할 것)</p> <p><신설></p>	<p>하였음을 의미하며, 타용도와는 무관합니다”라는 문구를 12 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가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제품의 외형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글자크기를 줄일 수 있다.</p> <p>7.2 사용상 주의사항(주5)(취급상 주의사항 : 사용방법이 필요한 제품은 사용방법을 명기할 것)</p> <p>주 1 성분 다음 항목의 표시방법 및 예시에 따라 표시한다. (1) 계면활성제 사용량에 따른 중량 백분율 표시 (계면활성제에 대하여는 표 4를 참고하여 계면활성제의 계별을 나타내는 용어를 이용해 표시하고, 계면활성제의 총 함량에 대해 중량 백분율로 표시한다.)</p> <p>표 4</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계면활성제의 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계면활성제의 계열을 나타내는 용어</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음이온계 계면활성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방산계(음이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직쇄 알킬 벤젠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고급 알코올계(음이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알파 올레핀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노말 파라핀계</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비이온계 계면활성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방산계(비이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고급 알코올계(비이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알킬 페놀계</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양쪽성 이온계 계면활성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아미노산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베타인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양이온계 계면활성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아민 옥시드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양이온계 계면활성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제4급 암모늄염계</td> </tr> </tbody> </table> <p>(표시 예) <계면활성제 표시> 지방산계(음이온), 직쇄알킬벤젠계(음이온), 알파올레핀계, 아미노산계, 베타인계,</p>	계면활성제의 구분	계면활성제의 계열을 나타내는 용어	음이온계 계면활성제	지방산계(음이온)	직쇄 알킬 벤젠계	고급 알코올계(음이온)	알파 올레핀계	노말 파라핀계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지방산계(비이온)	고급 알코올계(비이온)	알킬 페놀계	양쪽성 이온계 계면활성제	아미노산계	베타인계	양이온계 계면활성제	아민 옥시드계	양이온계 계면활성제	제4급 암모늄염계
계면활성제의 구분	계면활성제의 계열을 나타내는 용어																			
음이온계 계면활성제	지방산계(음이온)																			
	직쇄 알킬 벤젠계																			
	고급 알코올계(음이온)																			
	알파 올레핀계																			
	노말 파라핀계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지방산계(비이온)																			
	고급 알코올계(비이온)																			
	알킬 페놀계																			
양쪽성 이온계 계면활성제	아미노산계																			
	베타인계																			
양이온계 계면활성제	아민 옥시드계																			
양이온계 계면활성제	제4급 암모늄염계																			



현행	개정안
<p>〈신설〉</p> <p>주 1. 품명은 섬유유연제라 표시한다. 주 2. 섬유유연제의 성분표시는 성분계열을 나타내는 문자로 표시한다. 예시) 양이온계 주 3. 용량표시 및 표시치의 허용범위는 계량및측정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계량단위로 표시한다. 주 4. 액성의 표시에 있어서는 다음 표 왼쪽 난에 적힌 수소이온농도(pH)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 오른쪽 난에 적힌 액성표시 문자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이때, 소비자가 희석하여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도 원액상태의 수소이온의 농도(pH)를 표시한다.</p>	<p>아민 옥사이드계, 고급알코올계(비이온) 등 〈계면활성제 총 함량〉 - 5% 미만 - 5% 이상 ~ 15% 미만 - 15% 이상 ~ 30% 미만 - 30% 이상</p> <p>2) 인산염 사용량 표시(인산염에 대하여는 인산염의 용어를 이용해 표시하고 괄호쓰기로 오산화인(P₂O₅)으로서의 함량을 표시한다.) 3) 계면활성제 및 인산염 이외에 제품에 함유된 성분에 대하여 그 성분의 기능(첨가 이유)을 표시한다. (표시 예) - 표백제 - 산도조절제 - 효소 - 살균제 - 형광증백제 - 향료 - 방부제</p> <p>주 2 독성 제품에 사용된 성분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0조 또는 제11조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화학물질 또는 유독물·관찰물질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에 비교하며 특히 눈에 띄는 붉은 글씨로 제품의 전면부에 “△독성있음”이라 표시하여야 한다.</p> <p>〈삭제〉 〈삭제〉 〈삭제〉</p> <p>주 3 액성 액성은 다음 표 5 왼쪽 란에 적힌 수소이온농도(pH)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 오른쪽 난에 적힌 액성표시 문자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이때, 소비자가 희석하여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도 원액상태의 수소이온의 농도(pH)를 표시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생략〉</p> <p>주 5. 표준사용량의 표시는 용도에 따라 적합한 사용량을 g 또는 mL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스푼, 컵, 뚜껑 등에 의하여 계산할 때의 눈금이 되는 예시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농축형의 경우에는 희석용액(물)과의 배합비율(배수)도 함께 표시한다.</p> <p>주 6. 〈생략〉</p> <p>7.12 표시사항 1) 계면활성제 사용량에 따른 중량 백분율 표시(계면활성제에 대하여는 표 1을 참고하여 계면활성제의 계별을 나타내는 용어를 이용해 표시하고, 계면활성제의 총 함량에 대해 중량 백분율로 표시한다.)</p> <p>표 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계면활성제의 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계면활성제의 계별을 나타내는 용어</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음이온계 계면활성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방산계(음이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직쇄 알킬 벤젠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고급 알코올계(음이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알파 올레핀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노말 파라핀계</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비이온계 계면활성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방산계(비이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고급 알코올계(비이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알킬 페놀계</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양쪽성 이온계 계면활성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아미노산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베타인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양이온계 계면활성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제4급 암모늄염계</td> </tr> </tbody> </table>	계면활성제의 구분	계면활성제의 계별을 나타내는 용어	음이온계 계면활성제	지방산계(음이온)	직쇄 알킬 벤젠계	고급 알코올계(음이온)	알파 올레핀계	노말 파라핀계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지방산계(비이온)	고급 알코올계(비이온)	알킬 페놀계	양쪽성 이온계 계면활성제	아미노산계	베타인계	양이온계 계면활성제	제4급 암모늄염계	<p>〈현행과 같음〉</p> <p>주 4 표준사용량 표준사용량은 용도에 따라 적합한 사용량을 g 또는 mL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스푼, 컵, 뚜껑 등에 의하여 계산할 때의 눈금이 되는 예시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농축형의 경우에는 희석용액(물)과의 배합비율(배수)도 함께 표시한다.</p> <p>주 5 사용상 주의사항 〈현행과 같음〉</p> <p>〈삭제〉</p>
계면활성제의 구분	계면활성제의 계별을 나타내는 용어																	
음이온계 계면활성제	지방산계(음이온)																	
	직쇄 알킬 벤젠계																	
	고급 알코올계(음이온)																	
	알파 올레핀계																	
	노말 파라핀계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지방산계(비이온)																	
	고급 알코올계(비이온)																	
	알킬 페놀계																	
양쪽성 이온계 계면활성제	아미노산계																	
	베타인계																	
양이온계 계면활성제	제4급 암모늄염계																	



현행	개정안	비고
<p>(표시 예)</p> <p>〈계면활성제 표시〉</p> <p>지방산계(음이온), 직쇄알킬벤젠계(음이온), 알파올레핀계, 아미노산계, 베타인계, 아민 옥사이드계, 고급알코올계(비이온) 등</p> <p>〈계면활성제 총 함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미만 - 5% 이상 ~ 15% 미만 - 15% 이상 ~ 30% 미만 - 30% 이상 <p>2) 인산염 사용량 표시(인산염에 대하여는 인산염의 용어를 이용해 표시하고 괄호쓰기로 오산화인(P₂O₅)으로서의 함량을 표시한다.)</p> <p>3)첨가물의 표시(계면활성제 및 인산염 이외의 세정보조제 및 그 외의 첨가제에 대하여는 아래 재료들이 중량 기준으로 0.2% 를 초과하는 농도로 사용될 경우 그 성분의 기능의 명칭을 나타내는 용어를 이용하여 표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소계 표백제 - 염소계 표백제 - EDTA 및 그 염 - NTA (니트릴로트리아세트산) 및 그 염 - 페놀 및 할로겐화 페놀 - 파라다이클로로벤젠 - 방향족 탄화수소 - 지방족 탄화수소 - 할로겐화 탄화수소 - 비누 - 제올라이트 - 폴리카르복실레이트 <p>(아래 재료는 농도와 관계없이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소 - 살균제 - 향료 - 방부제 		<p>내용변경 없이 단순순서 변경</p> <p>내용변경 없이 단순순서 변경</p>

②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49 물휴지(물티슈)

현행	개정안																																																																								
<p>5. 안전요건</p> <p>5.1 유해화학물질 각 유해화학물질별 기준치는 6.1~6.4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다음 표 1에 적합하여야 한다.</p> <p>표 1 화학물질별 기준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화학물질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준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유기화합물 함유량</td> <td>메탄올</td> <td>20mg/kg 미만</td> </tr> <tr> <td>벤젠</td> <td>20mg/kg 미만</td> </tr> <tr> <td>톨루엔</td> <td>20mg/kg 미만</td> </tr> <tr> <td>자일렌</td> <td>20mg/kg 미만</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신설〉</td> </tr>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중금속 함유량</td> <td>납(Pb)</td> <td>20mg/kg 미만</td> </tr> <tr> <td>수은(Hg)</td> <td>20mg/kg 미만</td> </tr> <tr> <td>비소(As)</td> <td>20mg/kg 미만</td> </tr> <tr> <td>카드뮴(Cd)</td> <td>20mg/kg 미만</td> </tr> <tr> <td>크로뮴(Cr)</td> <td>20mg/kg 미만</td> </tr> <tr> <td>형광증백제</td> <td>검출되지 않을 것</td> </tr> <tr> <td>폼알데하이드 함유량</td> <td>20mg/kg 미만</td> </tr> </tbody> </table> <p>5.2 (생략)</p> <p>6. 시험방법</p>	화학물질명	기준치	유기화합물 함유량	메탄올	20mg/kg 미만	벤젠	20mg/kg 미만	톨루엔	20mg/kg 미만	자일렌	20mg/kg 미만	〈신설〉		중금속 함유량	납(Pb)	20mg/kg 미만	수은(Hg)	20mg/kg 미만	비소(As)	20mg/kg 미만	카드뮴(Cd)	20mg/kg 미만	크로뮴(Cr)	20mg/kg 미만	형광증백제	검출되지 않을 것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20mg/kg 미만	<p>5. 안전요건</p> <p>5.1 유해화학물질 각 유해화학물질별 기준치는 6.1~6.4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다음 표 1에 적합하여야 한다.</p> <p>표 1 화학물질별 기준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화학물질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준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유기화 합물 함유량</td> <td>메탄올</td> <td>20mg/kg 미만</td> </tr> <tr> <td>벤젠</td> <td>20mg/kg 미만</td> </tr> <tr> <td>톨루엔</td> <td>20mg/kg 미만</td> </tr> <tr> <td>자일렌</td> <td>20mg/kg 미만</td> </tr> <tr> <td>벤즈이소치아졸리논</td> <td>15mg/kg 미만</td> </tr> <tr> <td>메칠이소치아졸리논</td> <td>100mg/kg 미만</td> </tr> <tr> <td>페녹시에탄올</td> <td>10000mg/kg 미만</td> </tr> <tr> <td>트리클로산</td> <td>1000mg/kg 미만</td> </tr> <tr> <td>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td> <td>15mg/kg 미만</td> </tr> <tr> <td>벤잘코늄클로라이드</td> <td>500mg/kg 미만</td> </tr> <tr> <td>벤조익액씨드</td> <td>5000mg/kg 미만</td> </tr> <tr> <td>벤질알코올</td> <td>10000mg/kg 미만</td> </tr> <tr> <td>파라벤류</td> <td>4000mg/kg 미만</td> </tr>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중금속 함유량</td> <td>납(Pb)</td> <td>20mg/kg 미만</td> </tr> <tr> <td>수은(Hg)</td> <td>20mg/kg 미만</td> </tr> <tr> <td>비소(As)</td> <td>20mg/kg 미만</td> </tr> <tr> <td>카드뮴(Cd)</td> <td>20mg/kg 미만</td> </tr> <tr> <td>크로뮴(Cr)</td> <td>20mg/kg 미만</td> </tr> <tr> <td>형광증백제</td> <td>검출되지 않을 것</td> </tr> <tr> <td>폼알데하이드 함유량</td> <td>20mg/kg 미만</td> </tr> </tbody> </table> <p>5.2 (현행과 같음)</p> <p>6. 시험방법</p>	화학물질명	기준치	유기화 합물 함유량	메탄올	20mg/kg 미만	벤젠	20mg/kg 미만	톨루엔	20mg/kg 미만	자일렌	20mg/kg 미만	벤즈이소치아졸리논	15mg/kg 미만	메칠이소치아졸리논	100mg/kg 미만	페녹시에탄올	10000mg/kg 미만	트리클로산	1000mg/kg 미만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15mg/kg 미만	벤잘코늄클로라이드	500mg/kg 미만	벤조익액씨드	5000mg/kg 미만	벤질알코올	10000mg/kg 미만	파라벤류	4000mg/kg 미만	중금속 함유량	납(Pb)	20mg/kg 미만	수은(Hg)	20mg/kg 미만	비소(As)	20mg/kg 미만	카드뮴(Cd)	20mg/kg 미만	크로뮴(Cr)	20mg/kg 미만	형광증백제	검출되지 않을 것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20mg/kg 미만
화학물질명	기준치																																																																								
유기화합물 함유량	메탄올	20mg/kg 미만																																																																							
	벤젠	20mg/kg 미만																																																																							
	톨루엔	20mg/kg 미만																																																																							
	자일렌	20mg/kg 미만																																																																							
	〈신설〉																																																																								
중금속 함유량	납(Pb)	20mg/kg 미만																																																																							
	수은(Hg)	20mg/kg 미만																																																																							
	비소(As)	20mg/kg 미만																																																																							
	카드뮴(Cd)	20mg/kg 미만																																																																							
	크로뮴(Cr)	20mg/kg 미만																																																																							
형광증백제	검출되지 않을 것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20mg/kg 미만																																																																								
화학물질명	기준치																																																																								
유기화 합물 함유량	메탄올	20mg/kg 미만																																																																							
	벤젠	20mg/kg 미만																																																																							
	톨루엔	20mg/kg 미만																																																																							
	자일렌	20mg/kg 미만																																																																							
	벤즈이소치아졸리논	15mg/kg 미만																																																																							
	메칠이소치아졸리논	100mg/kg 미만																																																																							
	페녹시에탄올	10000mg/kg 미만																																																																							
	트리클로산	1000mg/kg 미만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15mg/kg 미만																																																																							
	벤잘코늄클로라이드	500mg/kg 미만																																																																							
	벤조익액씨드	5000mg/kg 미만																																																																							
	벤질알코올	10000mg/kg 미만																																																																							
	파라벤류	4000mg/kg 미만																																																																							
중금속 함유량	납(Pb)	20mg/kg 미만																																																																							
	수은(Hg)	20mg/kg 미만																																																																							
	비소(As)	20mg/kg 미만																																																																							
	카드뮴(Cd)	20mg/kg 미만																																																																							
	크로뮴(Cr)	20mg/kg 미만																																																																							
형광증백제	검출되지 않을 것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20mg/kg 미만																																																																								



현행	개정안
<p>6.1 유기화합물 함량 KS M ISO 11423-1에 따른다.</p> <p>6.2 ~ 6.5 (생략)</p> <p>8. 표시</p> <p>8.1 ~ 8.3 (생략)</p> <p>8.4 주요재질</p> <p>7.1의 모델의 구분에 따라 재질명을 표시한다. 주요 재질명 표기와 함께 구성률을 표시할 수 있다(예 : 면 100% 또는 레이온 60% · 펄프 40% 등)</p>	<p>6.1 유기화합물 함량 KS M ISO 11423-1 및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7 부록 C에 따른다.</p> <p>6.2 ~ 6.5 (현행과 같음)</p> <p>8. 표시</p> <p>8.1 ~ 8.3 (현행과 같음)</p> <p>8.4 성분</p> <p>1) 부직포 부분 : 재질명을 표시한다. 주요 재질명 표기와 함께 구성률을 표시할 수 있다(예 : 면 100% 또는 레이온 60% · 펄프 40% 등)</p> <p>〈신설〉</p> <p>2) 액체 부분: 전체 성분에 대하여 그 성분명을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시한다.</p> <p>(3)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표시한다.단, 착향제로 사용된 혼합원료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p> <p>(4)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남아 있지 않은 성분이나 사용된 원료에 포함된 안정화제, 보존제의 경우 제품에서 효능을 나타내지 않을 만큼 포함된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p>